

2022.11.17.(목) 10:30

청양군청 대회의실(1층)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자료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목 차

I. 협의회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1
--------------------	---

II. 시·군 건의사항

1.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	13
2.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15
3. 시·군·구 특례지정 협조 요청	16
4.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18
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20
6. 계룡IC앞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22
7.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매식비(급량비) 인상 건의	23
8.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건의	24
9.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25
10.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26
11.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27
12. 공무원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건의	29
13.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30
14.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홍보요청	33
추가 1.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34

III. 협의회 논의 및 심의

1.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37
2. 도내 호우피해 지역 추가지원	42
3.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43

IV. 홍보·협조사항

1. 보령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 홍보	47
2.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협조	49
3. 2022 제20회 양촌곶감축제 홍보	51
4. 2022 서천 마량진항 해넘이·해돋이 축제	53

[별첨자료]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57
--------------------------	----



I . 협의회 추진사항

01 1. 건의사항 처리결과

①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의처	소 관 부 처	건의 시	건의 명	처리 결과
계			13건	
소 계			6건	
충도 남청	출 산 보 육 과 정 책 과	‘22. 9.	• 市 추진 산모 산후 조리비용 도비 50% 지원 - 1인당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 50만원	장기 검토
	식 원 예 량 과	‘22. 9.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소형 5만원, 중형 10만원, 대형 20만원	장기 검토
	물 정 관 리 과 책 과	‘22. 9.	•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완화 - 시·군 경계가 산(표고 50m 이상) 능선인 경우 사면 실거리로 기준 재조정	수용 곤란
	노 복 지 인 과	‘22. 9.	•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10만원), 경로당 노인 회장(5만원)	수용 곤란
	식 원 예 량 과	‘22. 9.	• 쌀 값 하락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 건의 - ‘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확대 등	추진중
	식 원 예 량 과	‘22. 9.	• 농촌 일손부족 해결방안 건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가능토록 개선 등	추진중
소 계			7건	
대 민 시 군 협 의 회 한 국 장 수 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22. 9.	• 농어촌민박 면적기준 완화 건의 - 농어촌민박 규모기준 개선 통해 미등록업소 양성화로 안전사고 예방 등 투숙객 안전 확보	검토 진행중
	교육부 (학교정책과)	‘22. 9.	• 자율형 사립고 존치 정책 조속 이행 - 자사고 제도 존치를 위한 초·중·고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의 조속한 이행 필요	검토 진행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22. 9.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부패실태) 기준 건의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 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검토 진행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2. 9.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영급 기준 완화 건의 - 대규모 관광사업의 제약이 되는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건의	검토 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2. 9.	•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 현실화 - 피해 발생 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으로 피해 농가 지속 인상 요구	검토 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2. 9.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요청 - 농업경영 어려운 농가가 농어촌공사에 경작을 위탁한 농지를 농업경영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우스 등 설치 사유로 농지 임차 못 받는 사례 발생으로 인한 제도 개선	검토 진행중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2. 9.	•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구	검토 진행중

1. 산모 산후 조리비용 도비 지원 요청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천안시장
- 소관부처 : 충남도청 출산보육정책과
- 건의요지
 - 천안시 추진 「산모 산후 조리비용」 中 도비 50% 지원 건의
(1인당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 50만원 / 지역화폐로 지원)
 - 천안시 정책을 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산모 산후조리를 위한 돌봄사업 도비지원 사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사업
 - 지원금 : 최소 388천원~최대 5,093천원
 -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최대40만원) 지원
 - ※ 사업 지원방식 : 천안시(산후조리원 입소비용) ↔ 道(도우미 파견 비용)
 - 타 시·군에서도 산후조리 유사 사업을 100% 자체 부담하고 있고, 천안시 「산모 산후 조리비용」을 도비 지원 할 경우 도비 사업과 중복
 -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천안시는 입소 비용 지원 효과가 크나, 공공·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9개 시·군은 입소 비용 지원 효과 없음
 -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 따라서 천안시 「산모 산후 조리비용」 도비 50% 지원은 어려움
 - 다만, 지역여건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사업 지속적 확대 검토 예정
 - ※ 충남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8년부터 시행)

2.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아산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 건의요지
 -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비용 과다로 농가 부담 증가
 - 농업인들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 시 소요된 부품대금 일부지원(소형 5만원, 중형 10만원, 대형 20만원) * 농가당 5기종 35만원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15개 시·군 33개소) 운영 중
 -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나 '농업인 기계장비 수리지원'을 통해 영농기 이전 농업기계 수리지원 추진 중
 - ※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봄철 14개 시·군 58회, 가을철 14개 시·군 78회 / 부품대금 지급 X)
 - ※ 농업기계 수리봉사 활동(도서지역 3개소, 오지지역 15개소 / 부품대금 지급 O)
 - 현재 밭작물 중심으로 농업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원보다 농업기계화율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농업 기계화율('20년) : (밭) 61.9%, (논) 98.6%
 - 향후 농업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시·군경계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완화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서산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협조-축산과)
- 건의요지
 - 「시·군 경계지역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에서 규정한 시·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규제 범위를 평지와 산지로 구분하여 제한 거리 재조정
 - 시·군 경계 직선거리 600m, 1,500m로 제한한 것을 시·군 경계가 산(표고 50m 이상)능선인 경우 사면 실거리로 기준 재조정
 - 평지인 경우 기존 제한 거리를 유지하되, 갈등유발 요소 고려한 제한 거리 설정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해당 협약은 15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합의하여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이 동시에 조례 개정하고 도가 지원한 우수사례임
 - '19.3월 도가 행정조정협의회를 구성, 도 및 시·군 관련부서(축산과, 환경과, 건축과)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21.8월에 완료된 사업임
 - 행정협의회(4회), 실무회의(5회)를 통해 관련부서 의견 충분히 수렴함
 - 시·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축산업 육성 등 협약과 충돌하는 의견에 대해 기초의원·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개정 및 시행 됨
 - 15개 시·군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당 기간 소요되고 축산업 목적의 합의도 불투명함

4.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부여군수
- 소관부처 : 충청남도 노인복지과
- 건의요지
 - 노인회 지회장, 경로당 노인회장, 읍면 분회장을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역할 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
 - ※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 100천원(월) / 경로당 노인회장 : 50천원(월)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비슷한 성격의 민간단체 지도자(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장, 반장 등)와의 형평성 논란
 - 새마을지도자 : 지원없음, 부녀회장 : 농협에서 활동비(5만원/월) 지원, 의용소방대장 : 산불진압훈련, 소방관련 행사 참여시 4~5만원 지원, 반장 : 시·군비로 설·추석 명절 5만원 지원 등
 - ※ 노인회장 지원 시 타 민간단체 지도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 전 시·군 확대 시 소요 예산액
 - 총 소요액 : 3,790,200천원(도비 1,137,060 / 시·군비 2,653,140)
 - ※ 도내 노인회장 : 지회장(15명) / 읍면동 분회장(211명) / 경로당회장(5,865명)

참고 1 노인회장 지원시 연간 소요액

(단위 : 명/ 천원)

노인회장(명)				소요예산액(천원)		
시군	지회	분회	경로당	총액	도비(30%)	시군비(70%)
계	15	211	5,865	3,790,200	1,137,060	2,653,140
천안	1	31	744	484,800	145,440	339,360
공주	1	16	431	279,000	83,700	195,300
보령	1	16	414	268,800	80,640	188,160
아산	1	17	535	342,600	102,780	239,820
서산	1	15	390	253,200	75,960	177,240
논산	1	15	519	330,600	99,180	231,420
계룡	1	3	39	28,200	8,460	19,740
당진	1	15	347	227,400	68,220	159,180
금산	1	11	343	220,200	66,060	154,140
부여	1	16	464	298,800	89,640	209,160
서천	1	14	342	223,200	66,960	156,240
청양	1	10	308	198,000	59,400	138,600
홍성	1	11	371	237,000	71,100	165,900
예산	1	13	382	246,000	73,800	172,200
태안	1	8	236	152,400	45,720	106,680

※ 지급액 : 지회장/분회장 10만원(월) / 경로당 회장 5만원(월)

참고 2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및 근거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 ②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 ③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현실적 문제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시 연간 계획수립, 수행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경로당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산도 힘들어 마을 이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도움 없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간 계획 및 수행일지의 작성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경로당 회장은 명예직으로 마을 연장자 등이 임명되었는데,
유급 전환시 노인들 간 경쟁 및 마을 이장이 더 이상 경로당 관련
업무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5.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지원 대책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논산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 건의요지
 - '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확대 요구
 - '18~'20년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쌀 소비 촉진, 가공확대, 가축사료화 등 쌀값 안정 방안 마련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추진중
 - 정부는 '21년산 35만톤보다 10만톤 늘린 45만톤 매입결정
 - ※ 우리도 : '21년산 45천톤 → '22년산 58천톤(13천톤, 28.9% ↑)
 - '23년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추진하여 식량자급률 확대 계획
 - ※ 이모작, 논콩·밀·조사료 재배농가에 50~250만원/ha 지원
 - 도에서도 '22. 10월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시행 예정
 - '22.9. 25일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발표에 따라 벼값 반등
 - ※ 조곡 거래가 : 9. 23일) 45,000원/40kg → 9.28일) 50,000원/40kg

6. 농촌 일손 부족 해결방안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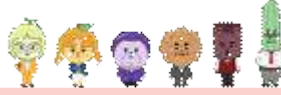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논산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협조부처-농식품부 경영인력과/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건의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가능토록 개선(현재 3·5개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시행(현재 전국 5개소 시범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관련 MOU 체결 지원 개선방안 조기 시행
※ 현재 MOU 체결방식은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직접 체결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추진중
 -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현, E-8, 5개월→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부여 예정
 - '27년까지 순차적으로 17개소 확대→'24년까지 조기 확대 추진
 - 기존 체결방식(국내 지자체↔외국 지자체)을 개선,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기초 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예정(법무부 지정기관 계획 마련 중)

⇒ 상기 건의사항의 업무 권한은 법무부와 농식품부 소관으로, 제6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시('22.9.8) 확정된 「농업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 사항으로 개선안 마련 중



II. 시·군 건의사항

- 13 1.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
- 15 2.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 16 3. 시·군·구 특례지정 협조 요청
- 18 4.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 20 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 22 6. 계룡IC 앞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 23 7.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매식비(급량비) 인상 건의
- 24 8.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건의
- 25 9.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 26 10.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 27 11.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 29 12. 공무원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건의
- 30 13.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 33 1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요청
- 34 추가1.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①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19. 7. 1.)에 따라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관계법령 개정 필요

□ 현황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19. 7. 1.)

- 공공건축물 사업추진 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연면적 5,000㎡ 이상 공용청사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총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감리비 등(약 7배 이상) 증가

-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중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
-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미반영 된 사업은 해당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일정 지연
- 공무원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되는 경우 건축공사에 대한 직접 공사감독 거부
 - ※ 미준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경력 있는 기술직공무원 부족

□ 건의사항

-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시키는 관계법령 개정 요구

작성기관

소 속 : 천안시(건축디자인과)

성명: 유경상 ☎041)521-2496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② 저소득 보훈가족 밀반찬 지원사업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추진기간	2023. 4. ~ 12.	소요예산	45,183천 원(도비30%, 시비70%)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추진

□ 현황

구 분	[당초]	[변경]
사 업 기 간	2021. ~ 2022.	2023. ~
사 업 비	도비 100% (도 자체사업)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사업)
지 원 대 상	◦ 저소득 보훈가구	
지 원 내 용	◦ 주 1회 밀반찬 지원 및 말벗 서비스 ◦ 보훈가족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발견 시 조치	

□ 문제점

- 도에서 추진하던 순 도비 100% 사업을 2023년부터 시군의 70%부담으로 전환
- 시군에서는 수혜자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 이런 예민한 사항을 시군의 사전 의견 조회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 개선사항

-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은 **충남도와 15개 시군 합심 추진 타당**
- 올바른 행정조직 문화 조성에 **충남도가 선도적인 역할 요청**
- 도 추진 사업을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사전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조율 절차 등 시군의 이해를 구하는 조치 필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필요**)
- 도 자체사업(도비 100%) 시군 이전하는 경우 시군 부담 최소화 요청
 - 도와 시군비 부담률 최소 도 70, 시군 30

작성기관

소 속 : 천안시(복지정책과)

성명: 이덕희 ☎ 041)521-3431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③ 시·군·구 특례지정 협조 요청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건설정책과)
추진기간	2022. 11.~12.	소요예산	비예산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관련, 아산시 특례 지정 추진을 통해 기초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 현황

- (실질적 행정수요) 아산시는 2021년 통계청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전국 2번째(용인, 아산 순)로, 인구 기준 유사 시(市)와 비교 시 *유사사례가 없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음
- * [참고1]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2021년)
- (현행처리절차)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 문제점

- (문제점) 도와 시·군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정처리기간이 장기소요되어 행·재정적 낭비 및 아산시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불가
- (*인근시 비교사례) 인접한 천안시와 도시개발사업 승인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천안시의 경우 7.3개월, 아산시의 경우 30.6개월로 지정권한 유무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의 차이가 매우 큼
- * [참고2] 천안시와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행정소요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 등 특례 필요) 개발압력 및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기 도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한 등의 특례 지정 필요

□ 건의사항

- (도·시·군 특례협의위원회 협의) 행안부 특례 신청 전에 도지사에게 특례협의위원회 설치 요청하여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안부 제출
 - 도에서 특례 신청에 대한 거부 권한은 없으나, 도·시·군 협의 결과가 행안부 최종 검토결과에 큰 영향
- ⇒ (시·군 특례 지정 적극 협조 요청) 올해 최초 시행되는 시·군 특례 지정이 충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군 특례협의회 신속 구성 및 협의과정 시 특례 소관부서(도 건설정책과)에서 특례 지정에 적극 협조 요청

－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④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추진기간	2022. ~ 2023.	소요예산	없음		

- ◆ `21년 전국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37만톤이 과잉 생산됨에 따라 쌀값 보전을 위해 3차례의 시장격리를 한 결과, 창고 여석 부족으로 4차 시장격리 및 `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농업진흥구역 내에 소재한 양곡창고 이용을 한시적 허용토록 요청드립니다

□ 현황

○ 쌀값현황(KOSIS 통계포털 기준)

(단위: 원/20kg 정곡)

구 분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22년(A)	45,534	44,415	42,522	40,725	46,941
`21년(B)	55,938	55,850	55,630	54,228	55,107
증감(A-B)	△10,404	△11,435	△13,108	△13,503	△8,166

○ 서산시 쌀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매입현황

(단위: 톤)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 (11월~12월)	
1차(완료) (2.14~3.31)	2차(완료) (6.7~7.19)	3차(완료) (8.1~8.31)	4차 (11월~12월)		건조벼	산물벼
			'21년산	'22년산		
5,144	16,614	5,085	8,876	9,013	6,004	1,960

○ 서산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여석 현황

창고 수	보관능력	창고여석	여석율(%)
23개소	14,956톤	1,051톤	7%

- ➡ 4차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건조벼) 매입량(23,893톤) 대비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여석은 1,051톤으로 보관창고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

- ➡ 현재 민간창고 계약추진 중 : 7개소(보관가능량 14,050톤)

□ 문제점

- ‘21년산 시장격리곡 3차례 걸쳐 26,843톤을 이미 매입함에 따라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여석 부족이 심각한 상태(여석을 7% 내외)
- 현재 보관창고 신규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고,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 창고는 양곡창고로 활용이 불가(농지법 위반)

※ 농업진흥지역내 양곡창고로 활용하던 5개 창고는 ‘22. 3월에 계약해지(농식품부 지시)

- 이로 인해 4차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건조벼) 매입시 양곡창고 부족으로 타 시군(시도)의 이고가 불가피(과다한 운임발생)하고 매입 일정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함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내 용	비 고
농지법 제 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연도인 ‘92년 이전 준공된 창고는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농업진흥지역내 가공·처리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나(신규 불가능), 정부양곡보관창고의 경우 농지법에 저촉 (신규 및 재계약 불가능)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4차 시장격리곡 및 ‘22년산 공공비축미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그동안 활용했던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5개소 / 보관능력 6,156톤)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작성기관

소 속 : 서산시(농정과)

성명: 정윤희 ☎041)660-2374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비에산		

◆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개정으로 저수지 수변개발을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관광활성화 추진

□ 현황

-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활력 저하의 위기에 처한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 중 농업용 저수지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요구 증대

□ 문제점

- 저수지 수변개발을 통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간사업자를 통한 투자·개발이 필요하나,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사용허가 시설 전대(轉貸)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한 관광개발이 불가능함
 - 저수지는 대부분 하천구역이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천법에서는 전대가 가능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에는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건의사항

- 하천법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개정 요청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사용계약의 해지)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된 시설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제17조의2(사용계약의 해지) 1. ----- -----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하는 공공이익 증진(관광개발 등)을 위한 사용허가시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으며,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 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작성기관

소 속 : 논산시(미래전략실)

성명: 박형권 ☎ 041)746-6643

－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⑥ 계룡IC앞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국도대체우회도로두마연선건설공사)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국토교통부
추진기간	2018. ~ 2025.	소요예산	1,875억원 (국비)		

□ 사업개요

-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5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8.54km, B=20m(4차로) / 1,875억원(국비 100%)
-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 그동안 추진사항

- 2014.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3. : 관계기관 협의
- 2015. 4. : 계룡시 협의의견 제출(건설교통과 : 계룡IC앞 입체교차로 설치 요청)
- 2015. 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두마면사무소)
 - 국토교통부 : 검토 결과 약 350~400억원이 투입되어 타당성 부적합
- 2017. 3. :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두마면사무소)
- 2017.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10. ~ 2025. 9. : 토지보상, 공사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계룡IC 및 계룡대로와 연결된 왕대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계룡시 관문인 계룡IC 진·출입 차량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량으로 인한 상습 정체 예상 및 사고 위험성 상존
- 또한, 국방안보의 핵심인 3軍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 특성상, 전쟁시 군사 작전을 저해하므로 평면 → 입체교차로로 변경을 요청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건설교통과)

성명: 정현준 ☎042)840-2564

－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⑦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인상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추진기간	2022. ~ 계속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및 식대 인상과 관련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를 현실화 하여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근로복지 향상

□ 지급 현황

○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 지급표/2015년 개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20,000

※ 일비 :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출당하기 위한 여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中 일반운영비
급량비(매식비) 기준 :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

□ 문제점

- 급량비(매식비)는 2016년도에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식대 인상에 따른 비현실적인 급량비 기준으로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현실화 필요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무원 처우 개선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선하여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인상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자치행정과)

성명: 박영애 ☎042)840-2102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⑧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2. 11. 17.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건강정책과)
추진기간	~ 2022.12.	소요예산	비예산		

- ◆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 시 제안된 사안으로 충남시군협 통해 건의 요청
- ◆ 건강보험 정부지원 ‘22년 末 종료 예정 … 관련 법 개정 국회 논의 無
- ◆ 정부지원 종료 시 국민 보험료 ‘약 18% 대폭 인상’ 우려 심화

□ 현황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07년 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 … (‘11년) 5년, (‘16년) 1년, (‘17년) 5년 연장

□ 문제점

-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야기로 국민부담 지속 가중
 - －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국민부담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
 - － 정부지원금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 시 약 2년 내 준비금 고갈 위기
 - * 안정적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정 준비금(10조원 이상) 유지 필요

□ 건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상의 한시지원 삭제,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지원을 현실화 등 법 개정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자치행정과)

성명: 박미혜 ☎041)350-3232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⑨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추진기간	2023년	소요예산	-		

-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임금상승 등 농업 인력난 심화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 필요

□ 현황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현황(전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비고
계		8,249	8,871	1,388	2,379	11,567	
고용허가	체류인원	23,804	24,509	20,689	17,781	20,073	
	배정인원	6,600	6,400	6,400	6,400	8,000	
	공급인원	5,820	5,887	1,388	1,841	5,415	
계절근로	배정인원	2,936	3,612	4,917	6,216	16,924	
	공급인원	2,249	2,984	0	538	6,152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 예산지원 : 개소당 65백만원(국 50%, 지자체 50%)
- '22년 시범도입 : 전북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충남 아산시, 부여군(5개소)
- '23년 사업규모 : 9개소('22. 10. 신청접수, '23. 1. 운영개시)
- '24년부터 사업규모 : 연도별 17개소

□ 문제점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가 적어 농업 인력 수급 한계
- 1개월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활용 어려움 발생

□ 건의사항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지정 확대 및 개소별 예산지원 확대
- 계절근로 사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사업자 지정 권한 부여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농업정책과)

성명: 김동숙 ☎041)350-4122

－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⑩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추진기간	2023.01.01.~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노인층의 사회·경제적 생활 수준 향상

□ 현황

-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총 3,781명)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배정량(안): 3,729명
 - ‘22년 사업량 대비 52명 감소 및 ‘23년 수요조사(4,278명) 대비 549명 부족

□ 문제점

- 노인일자리 수요 대비 사업량 부족 및 ‘22년 대비 ‘23년 사업량 감소
 - 사업량 대비 신청자 수: ‘21년 - 3,676명(5,066명) / ‘22년 - 3,781명(4,871명)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
 - 부여군 노인인구 중 약 20%(약 4,600명)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로 노인일 자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현행 사업 보완 및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시 일자리 사업량 추가 배정 요청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가족행복과)

성명: 유재현 ☎041)830-2505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⑪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추진기간	연중	소요예산	20억/년(국비)-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현황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양수장, 배수펌프장,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노후로 유지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경작로 포장율 및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낮아 경작인의 불편이 매년 가중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

□ 문제점

- 관리 시설물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경작인들의 피해 발생 및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관리지역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경작인들로부터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 각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타 기관에 예산지원이 어려운 형편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배수 개선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구역의 시설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건설교통과)

성명: 정진규 ☎041)630-1844

참고사항

□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현황

○ 용·배수로 현황

[단위 : m]

계	용수로		배수로	
	흙수로	구조물	흙수로	구조물
704,434	78,471	367,990	106,610	151,363

○ 농업 기반 시설물 현황

계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65	10	21	7	8	19

□ 농어촌공사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시설물관리비	퇴적물제거비	시설물관리비	퇴적물제거비	시설물관리비	퇴적물제거비
134,087	46,560	174,169	51,387	185,301	43,698

-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은 증가 하였지만,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21년 까지	'22년 계획	'23년 이후	비고
배수개선	8,510,000	190,000	1,200,000	7,120,000	신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4,000,000	70,000	850,000	3,080,000	금천지구

□ 농어촌공사 인력현황

○ 홍성지사 농어촌사업부

계	부장	파트장	토목	기전	기술원
15	1	2	6	4	2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⑫ 공무직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기획단)
추진기간	연중	소요예산	-		

- ◆ 매년 지자체별 진행되는 임금 협약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하므로 노사 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통일적 ·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필요

□ 현황

- 공무직 임금 지급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노사 간 임금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여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고 있음

※ 홍성군 공무직 현황 : 197명 (도로보수, 농기계수리, 수도검침, 행정지원, 환경미화 등)

□ 문제점

-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간 명확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임금 협약 교섭 과정에서 직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 발생
-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만 타시군 지급 기준과 비교되기에 매년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중앙부처 단위의 공무직 임금에 대한 통일적 지급 기준 마련 요구
⇒ 공공부문 공무직간 차별적 요소 해소, 매년 임금 협약 시 발생하는 노사간 · 직원간 갈등 방지 및 행정력 낭비 예방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행정지원과)

성명: 김혜숙 ☎041)630-1815

－ 건의사항(중양부처, 충청남도) －

⑬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농촌활력과)
추진기간	2023~2027년	소요예산	31,6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19,900)		

- ◆ 2001년 (구)충남방적 공장 폐쇄로 인해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되어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공포 및 노후 공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농촌경관 저해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

□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외 21필지[(구)충남방적 부지]
- 대상면적 : 98,344㎡(29,778.6평)
- 총사업비 : 31,600백만원(국9,000, 도 2,700, 군 19,900)
 - ※ 매입비(19,000백만원), 철거비(9,000백만원), 공동시설(3,600백만원) 등
 - ※ 사업비는 감정평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 사업내용 : (구)충남방적 부지매입, 슬레이트 지붕 및 건물 철거, 부지정비, 기반시설조성, 주거 및 공동시설 조성 등

□ 기대효과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공간 및 주거단지 연계 조성으로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중양부처 및
충남도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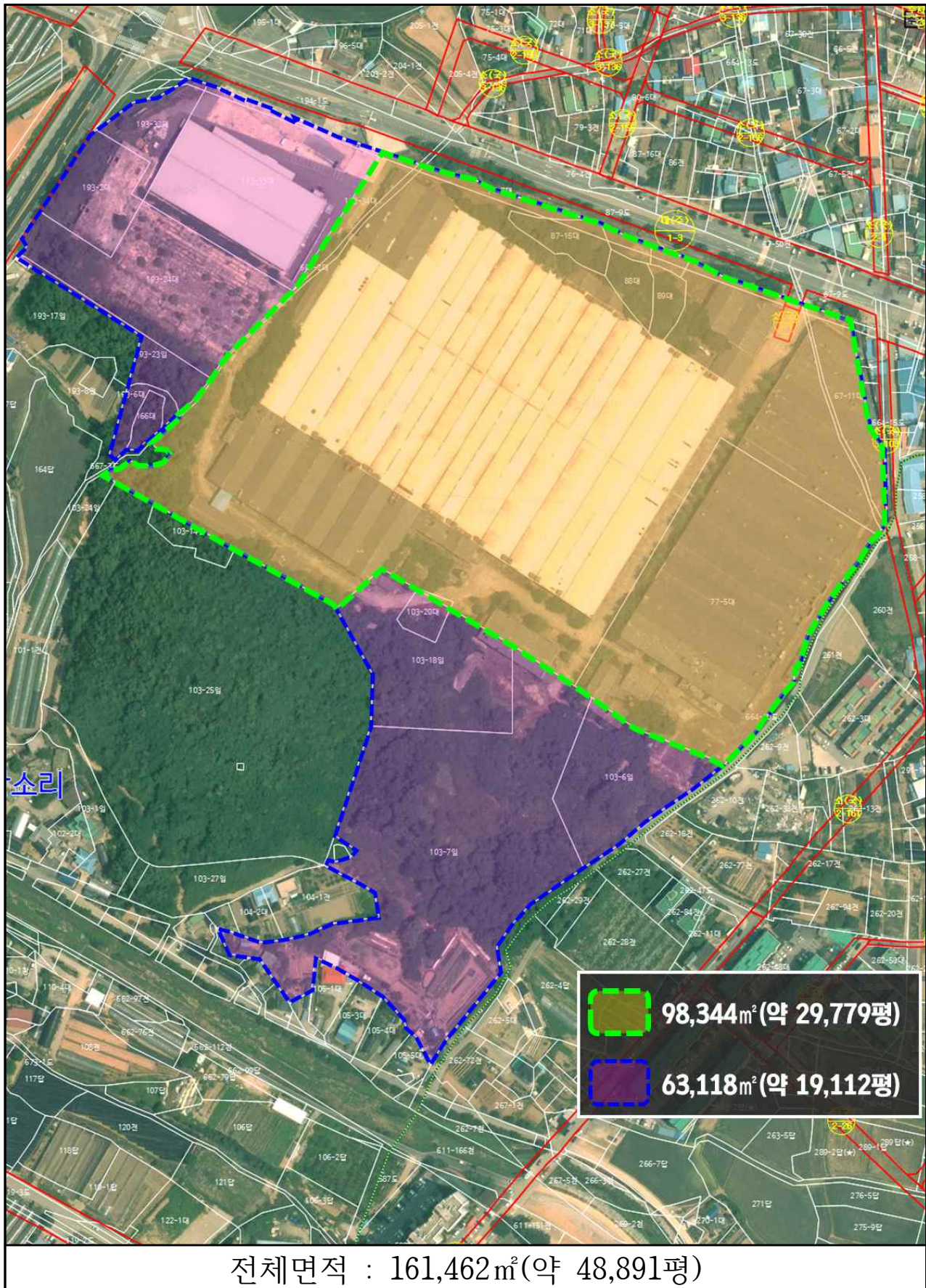
- (구)충남방적 유해시설철거 및 주민생활 편의공간 확충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및 연계사업 추진 건의
 - 농식품부 : 농촌공간돌봄단지 조성,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 충청남도 :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농정유통과)

성명: 김홍연 ☎041)339-7567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⑭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홍보 요청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국민 인식률이 낮아 대국민 홍보 필요

□ **현황**

- 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낮은 조회수로 인하여 홍보 효과 미비
 - 공익광고,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필요
-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N포털에 ‘고향사랑 기부제’ 검색 시 ‘고향사랑 기우제’로 자동 검색

□ **문제점**

-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 시행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 권유·독려 행위 금지로 홍보 제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위반시 고향사랑 기부금 반환 및 모금 제한

□ **건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홍보 요청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총무과)

성명: 박상훈 ☎041)339-7233

— 건의사항(중앙부처) —

추가①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2.11.17.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인구 15만 미만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부단체장 및 국장의 동일직급(4급) 운영으로 지휘·통솔체계 혼란 가중

➔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현 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부단체장 직급 기준 명시
 -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4급)
-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실·국(4급) 설치기준 마련
 - ※ 현재, 인구 15만 미만 시·군·구 실·국 설치기준(1개 이상 3개 이하)으로 개정

□ 문 제 점

- 부단체장과 국장 동일직급(4급) 운영으로 조직 내 지휘·통솔권 혼란
- 중앙부처 및 道 단위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한 업무대응력 미약

□ 건의사항

- 인구 10만 미만 시·군,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 → 3급)을 통한 지휘·통솔체계 확립 및 중앙부처와의 대응교섭력 강화 필요

➔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현행(안)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

개정(안)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

작성기관

소 속 : 충청남도 금산군

성명 : 한민석, 박민희 ☎041)750-2333



Ⅲ. 협의회 논의 및 심의

- 37 1.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 42 2. 도내 호우피해지역 추가지원
- 43 3.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보고사항

①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민선8기1차년도(2022.7.1.~2023.6.30.)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총칙

(단위:천원)

구 분	예산총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
합 계	246,879	319,605	△72,726
일반회계	246,879	319,605	△72,726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246,879	구성비	319,605	구성비		
경상적 수입	150,000	60.8%	150,000	46.9%	0	
자치단체 부담금	150,000	60.8%	150,000	46.9%	0	회비수입(15시군)
보전수입	96,879	39.2%	169,605	53.1%	△72,726	
순세계 잉여금	96,879	39.2%	169,605	53.1%	△72,726	

□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합 계	246,879	구성비 100%	319,605	구성비 100%	△72,726
지방자치발전	42,000	17.0	72,000	22.5	△1,000
지방자치분권 추진	42,000	17.0	72,000	22.5	△1,000
자치분권 활성화	42,000	17.0	72,000	22.5	△1,000
행정운영경비	204,879	83.0	247,605	77.5	77,495
인력운영비	94,393	38.2	78,198	24.5	2,977
인력운영비	94,393	38.2	78,198	24.5	2,977
기본경비	110,486	44.8	169,407	53.0	74,518
기본경비	110,486	44.8	169,407	53.0	74,518

별지

세입·세출 예산[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246,879	319,605	△72,726
경상적 수입		150,000	150,000	—
	자치단체 부담금	150,000	150,000	—
	◎ 회비 수입 10,000,000원*15개시군	150,000	150,000	—
보전수입		96,879	169,605	△72,726
	잉여금	96,879	169,605	△72,726
	◎ 순세계잉여금	96,879	169,605	△72,726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246,879	319,605	△72,726
지방자치발전				42,000	92,000	△50,000
지방자치분권추진				42,000	92,000	△50,000
자치분권 활성화				42,000	92,000	△5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60,000	△50,000
03 행사운영비				10,000	60,000	△50,000
◎ 협의회 회의운영 1,000,000원*10월				10,000	10,000	0
◎ 지방정부 정책대회 개최				0	50,000	△50,000
▷ 50,000,000원*1식						
203 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 자치분권 시책추진 1,000,000원*12월				12,000	12,000	0
207 연구개발비				20,000	20,000	0
01 연구용역비				20,000	20,000	0
◎ 지방자치(분권) 용역추진				20,000	20,000	0
307 민간이전				0	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0
행정운영경비				204,879	227,605	△22,726
인력운영비				94,393	93,123	1,270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인력운영비	94,393	93,123	1,270
			101 인건비	94,393	93,123	1,270
			01 보수	21,600	21,600	0
			◎ 파견보조비(수당)			
			▷ 600,000원*2명*12월	14,400	14,400	0
			◎ 주거지원비(교통비)			
			▷ 600,000원*1명*12월	7,200	7,200	0
			02 기타직 보수	72,793	71,523	1,270
			◎ 전문위원(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2,793	71,523	1,270
			▷ 연봉 53,653,000원*1명	53,653	53,653	0
			▷ 4대보험료 700,000원*1명*12월	8,400	7,200	1,200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1,680	0
			▷ 직급보조비 218,750원*1명*12월	2,625	2,625	0
			▷ 시간외근무수당 12,321원*1명*30시간*12월	4,435	4,365	70
			▷ 기타수당(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 2,000,000원*1명	2,000	2,000	0
			기본경비	110,486	134,482	△23,996
			기본경비	110,486	134,482	△23,996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0,700	50,700	△30,000
			01 사무관리비	19,200	49,200	△30,000
			◎ 일반수용비 1,000,000원*12월	12,000	12,000	0
			◎ 급량비 200,000원*3명*12월	7,200	7,200	0
			◎ 지방정부 정책사례집 제작 1식	0	30,000	△30,000
			02 공공운영비	1,500	1,500	0
			◎ 제세공과금 100,000원*12월	1,200	1,200	0
			◎ 회계업무관련 공무원 재정보험 300,000원	300	300	0
			202 여비	14,400	14,400	0
			01 국내여비	14,400	14,400	0
			◎ 협의회 업무추진 400,000원*3명*12월	14,400	14,400	0
			203 업무추진비	15,600	15,6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600	15,600	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00,000원*12월	15,600	15,600	0
			405 자산취득비	0	0	0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	0	0
			800 예비비및기타	59,786	53,782	6,004
			01 일반예비비	29,786	13,782	16,004
			◎ 예비비	29,786	13,782	16,004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000	40,000	△10,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000	40,000	△10,000

논의사항

② 도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보령) 추가지원(안)

□ 지원 배경

-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복구 지원

□ 그동안 지원현황

- '20. 8. :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천안, 아산, 금산, 예산) 지원(20백만원)
※ 각각 5백만원 상당 의연물품 지원
- '21. 1. :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회위원회 지원(15백만원)
- '22. 4.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삼척, 동해, 울진) 지원(30백만원)
- '22. 4. : 서산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10백만원)
- '22. 10. : 도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부여, 청양) 지원(20백만원)

□ 피해 현황(2022. 8. 30.기준)

- 물적피해 : 1,264건, 53억원
 - 농경지 침수 : 10.5ha
 - 공공시설 105건 47억원, 사유시설 1,159건 6억원
 - ※ 누적강우량 : 420.9mm
- 인적피해 : 이재민 25세대 25명
-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령시) : '22. 9. 1.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총 10,000천원
 - ※ 재원 : 예비비및기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지출
- 지원내용 : 피해지역(보령시) 의견을 반영하여 의연물품 또는 지원금으로 지원

논의사항

③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남협의회 회의 개최지 사전 논의

□ 회의 개요

- 큰 거 : 『협의회 회칙』 제10조 (회의)
- 참석대상 : 충남 시장·군수 15인
- 회의개최 : 격월(연 6회)
- 주요내용 : 협의회 활동사항, 시군 건의사항, 논의안건 등 보고

□ 개최 방안

- 개최시기 : 2023. 1월 또는 2월 중(협의)
- 개최장소 : 협의

□ 민선 7기 및 8기 1차년도 1차회의 충남협의회 회의 개최현황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민선 7기 1차연도	2018.12.20.(목)	논산시청 상황실, 선샤인랜드	
	2019.01.17.(목)	충남도청 대회의실	
	2019.03.13.(수)	천안시청 중회의실	
	2019.05.27.(월)	당진시청 해나루홀	
민선 7기 2차연도	2019.07.25.(목)	충남도청 대회의실	
	2019.09.30.(월)	논산 돈암서원	
	2019.12.26.(목)	충남도청 문예회관	
	2020.02.03.(월)	도 현장대책본부 상황실(아산)	
	2020.03.18.(수)	충남도청 대회의실	
	2020.05.19.(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민선 7기 3차연도	2020.07.13.(월)	서산 베니키아 호텔	
	2020.12.16.(수)	영상회의	
	2021.01.28.(목)	영상회의	
	2021.03.29.(월)	영상회의	
	2021.05.27.(월)	논산시청 회의실	
민선 7기 4차연도	2021.09.07.(화)	공주 아트센터 고마	
	2021.12.21.(화)	금산군청 다목적 회의실	
	2022.03.28.(월)	충남도청 대회의실	
	2022.06.09.(목)	홍성군청 회의실	
민선 8기 1차연도	2022.09.16.(금)	천안시청 대회의실	



IV. 홍보·협조사항

- 47 1. 보령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 홍보
- 49 2.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 협조
- 51 3. 2022 제20회 양촌곶감축제 홍보
- 53 4. 2022 서천 마량진항 해님이·해돋이 축제

협조·홍보사항

① 보령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 홍보

【 보령시 】

◆ 보령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이 개관(2022. 6. 30.)함에 따라, 충남 유일의 공공시설 컨벤션관인 본 시설의 사용과 홍보 협조

□ 개요 · 현황

- 위 치: 보령시 신흥동 고삼2길 55
- 시설규모: 대지 5,477㎡ / 건축연면적 7,741㎡(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컨벤션관(컨벤션홀, 세미나실), 체험관*(스파, 테라피, 전시) * 개관 준비중
- 시설 현황



□ 주요 행사 현황(2022. 7월 ~ 현재 / 총 53개 행사 대관)

연번	행 사 명	주최/주관	인원(명)	비고
1	충남 지방정부 회의	충청남도	50	
2	2022 아시안컵보령국제요트대회	충남요트협회	250	
3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박람회조직위	600	
5	제8회 환황해포럼	충청남도	400	
6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한국농업인경영인연합회	300	
7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0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예약문의: ☎ 041 936 9475 · ✉ soso12@mud.or.kr

- 도, 시 · 군에서 추진예정인 각종 회의 및 대규모 행사 이용 협조

참고

컨벤션관 시설현황

(단위: 원)

구 분	면적(m ²)	수용인원(명)			사용료(전일)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컨벤션홀	867.84	900	450	400	2,080,000
회의실 1	77.39	72	48	30	184,000
회의실 2	62.89	58	36	20	148,000
회의실 3	118.60	110	75	40	283,000
회의실 4	109.74	110	75	40	261,000
회의실 5	116.84	110	75	40	278,000
회의실 6	111.50	110	75	40	266,000
회의실 1+2	140.28	130	84	50	332,000
회의실 3+4	228.34	220	150	80	544,000
회의실 5+6	228.34	220	150	80	544,000

— 협조·홍보사항 —

②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 협조

【 아산시 】

- ◆ 국가적 의료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탄한 의료복지 증진

□ 개요

- 위 치 : 아산시 초사동 463-10 일원(약 81,118㎡)
- 사 업 비 : 약 2,500억 ※ 추정금액
- 사업기간 : 2022. ~ 2027.

< 건립예정지(사업대상지) 위치 >



□ 국립경찰병원(충남) 필요성

- 재난 발생 또는 비상시 체계적 대응할 지역거점 국립병원 부재
- 충남 서북권 의료생활권(대진료권) 기준 약 160만명 의료시설 부족으로 응급 환자 골든타임 내 대응 불가(아산36, 천안67, 서산18, 예산9, 홍성10, 당진17, 청양3)
- 의료기관 수도권 등 지역편중 심화로 공공의료기관 균형배치 절실
 - * 충남 의료비 역외유출 1조 3,859억 원 (17개 광역 중 전국 3위)

□ 협조사항

- 국립경찰병원 충남(아산) 유치 확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 적극 협조
 - * 충청남도 발송 공문 참조

참고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 국립경찰병원 아산

- (공공의료 거점) 경찰병원 아산 입지 시 1,000만* 명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거점 국립병원으로 기능

* 차량으로 아산까지 1시간내 접근 가능한 인구 충남 177만, 대전 104만, 경기 582만, 충북 98만, 세종 35만 등



[경찰병원(아산) 입지시 차량으로 1시간 내 의료서비스 수혜 1,000만명]

- (중부권 거점) 충남-충북-대전-세종의 공공의료 벨트의 마중물로서 의료 지역편중 해결 및 국민의 의료복지 수준 제고

2020년 지역별 진료비 역외유출 현황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17개中)	총진료비(외래+입원)	역외진료비(외래+입원)	역외유출 비율(%)
충남	4조 1,606억원	1조 3,859억원	33.3%(3위)
서울	16조 7,108억원	1조 7,739억원	10.6%
대전	2조 5,829억원	3,319억원	12.8%

2020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17개中)	의사(전국평균: 302명)	간호사(전국평균: 435명)
충남	236명(15위)	288명(16위)
서울	450명(1위)	566명(2위)
대전	362명(3위)	509명(5위)
광주	374명(2위)	628명(1위)

— 협조·홍보사항 —

③ 2022 제20회 양촌곶감축제 홍보

【논산시】

◆ 풍부한 일조량, 신선한 복서풍, 높은 일교차로 자연 건조된 품질 좋은 양촌곶감을 널리 알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 요

- 기 간 : 2022. 12. 9.(금) ~ 12. 11.(일) 【3일간】
- 장 소 :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454 (양촌체육공원 일원)
- 주 관 : 양촌곶감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체험
 - 노래자랑, 곶감가요제, 개막축하공연
 - 감식초 시음회, 감 깎기 체험 등
 - 양촌곶감판매장,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 협조사항

- 명품 양촌의 달콤한 맛, 다채로운 체험, 풍부한 문화자원까지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양촌곶감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홍보 협조



축제 메인무대



감깎기 체험

〈2019 양촌곶감축제 사진〉

붙임 홍보 포스터

양촌곶감특구지정
도지사 품질추천으로 으뜸 인증



감빛 물든 그리움, 점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

양촌 곶감축제



2022. 12.09.(금) ~ 11.(일) 3일간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

12. 09.(금) 15시 개막식 행사

개막축하공연

김성환, 문규리, 유동아, 하나영
백년부부, 평양예술단

폐막공연

한혜진, 다감, 불꽃쇼

주요프로그램

전국곶감가요제, 지창수 공연
감각기 체험,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메추리구워먹기, 양촌곶감판매장 운영

|주관| 양촌곶감축제추진위원회

— 협조·홍보사항 —

④ 2022 서천 마량진항 해님이·해돋이 축제

【 서천군 】

◆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마량진항 대내·외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님이·해돋이 행사 추진

□ 행사개요

- 기 간 : 2022. 12. 31.(토) ~ 2023. 1. 1.(일)
- 장 소 :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 일원
- 주최/주관 : 서천군/서면개발위원회
- 일몰/일출 : (일몰)12. 31.(토) 17:28/(일출)1. 1.(일) 07:44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KAIS) 참고

○ 주요행사

- 부대행사 : 버스킹 공연, 떡국나눔 행사, 새해맞이 불꽃놀이
- 체험행사 : 소원 등 달기, 고구마 구워 먹기 등

□ 홍보사항

- 서천 마량진항 해님이·해돋이 축제에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관련사진





별첨자료

57 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정) 1998. 08. 22.
(일부개정) 2019. 05. 27.
(일부개정) 2019. 09. 30.
(일부개정) 2020. 07. 13.
(일부개정) 2021. 09.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는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협의회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